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최경천 의원 등 15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3월 8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3. 제안사유

- 충청북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안 제3조~제4조)
- 다. 청년일자리위원회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라. 교육기관의 활용 및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7조~제8조)
- 마. 취업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안 제9조~제10조)
- 바. 행정·재정지원(안 제11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덕항)

가. 제출배경

- 우리 경제 구조는 발전과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상실감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고령화 및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4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화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도 차원에서도 청년일자리팀 구성 및 다양한 사업의 기획·추진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함.

<충청북도의 청년 고용 등 관련 지표 현황>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단위 : 천명, %/ 15~39세, '21.3분기)

구분	청년인구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충북	482	290	192	60.1	58.1
전국	15,709	9,603	6,106	61.1	58.5

-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청년 순이동(명) : ('18) -842 ▶ ('19) -2,382 ▶ ('20) -2,903
- 청년 실업률('21. 12월 말 기준)은 2.1%로 전국 평균 4.0%보다 낮고,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1.5%), 전북(1.9%)에 이어 세 번째임.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 취지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지금까지 충청도에서는 대상을 포괄하는 일자리대책 계획 수립 외에,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수립한 경험이 없음.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 설치·운영을 방지하였음.

-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상담, 알선, 컨설팅 등 연계 지원, 해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 3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매년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 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제1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해당기관 정원의 3%를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 제출된 ‘충청북도 일자리 사업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